

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

2003. 7. 2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년 6월 12일 마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3년 6월 1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97회 제1차정례회 제4차위원회 (2003. 7. 2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이 관 재

가. 제안이유

정부(외교통상부)로부터 우리구가 일반여권 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2003년 7월 1일부터 여권과를 신설하여 여권관련 업무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, 사스(SARS)의 세계적 확산 등으로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급감하는 등 여권발급 대행업무량이 감소하여 정부(외교통상부)에서 2004년 1월 12일로 시행시기를 연기하도록 통보됨에 따라 그 시행시기를 연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여권과 신설 및 여권관련 업무의 시행시기를 "2003년 7월 1일"에서 "2004년 1월 12일"로 연기하는 내용을 규정함. (안 제4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박 관 수)

○ 동 개정조례안은 2003. 4. 14일 제95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과 관련 별

표4의 비고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관리국에 여권과를 신설하고, 2003. 3. 10일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시행일정에 의하여 부칙에서 시행일을 2003. 7. 1일로 정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가 개정되었으나 그 동안 이라크전쟁 및 사스(SARS) 등의 사유로 여권 발급량이 급격히 감소됨에 따라 2003. 4. 22일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시행시기를 2004. 1. 12일로 연기한다는 내용이 통보됨에 따라 동 조례안 부칙에 규정된 시행일자를 통보된 내용과 같이 2004. 1. 12일로 개정하려는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의요지(정형기 위원) : 사무실 확보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?
- 답변요지(이관재 총무과장) :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.
- 질의요지(신봉현 위원장) : 외국어 등 근무적임자 발령은?
- 답변요지(이관재 총무과장) : 12월 발령시 고려할 것임.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03.06.11

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정부(외교통상부)로부터 우리구가 일반여권 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2003년 7월1일부터 여권과를 신설하여 여권관련 업무를 시행 할 예정이었으나, 사스(SARS)의 세계적 확산 등으로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급감하는 등 여권발급 대행 업무량이 감소하여 정부(외교통상부)에서 2004년 1월 12일로 시행시기를 연기 하도록 통보됨에 따라 그 시행시기를 연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
2. 주요 개정골자

여권과 신설 및 여권관련 업무의 시행시기를 "2003년 7월 1일"에서 "2004년 1월 12일"로 연기하는 내용을 규정함.(안 제4조)

3. 개정근거

- (1) 지방자치법(2002.3.25 법률 제6669호) 제102조
- (2)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(2002.8.14 대통령령 제17707호)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4 비고 제3호
- (3) 외교통상부 여권 29400-3316(2003.4.22)호로 시행시기 연기 통보

4. 조례(안) : 따로붙임

5. 예산조치 : 필요함

6. 기타사항

- (1) 입법예고 : 서울특별시마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 하여 생략함
- (2)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03.6.9)
- (3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 535호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중 “2003년 7월1일”을 “2004년 1월 12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조례 제 535호 부칙(2003.5.6) 이 조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 한다.</p>	<p>조례 제 535호 부칙(2003.5.6) -----2004년 1월 12일----- ---</p>